#### [서식 예]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(피고를 추가하는 경우)

## 필수적 공동소송인(피고) 추가신청서

사 건 2000가단000 공유물분할 등

원 고 ○○○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인(피고)의 추가를 신청합니다.

### 신 청 취 지

이 사건의 피고로 ◈◈◈ (주민등록번호) {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 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}을 추가함을 허가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### 신 청 이 유

원고는 피고 ◇◇◇만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, 공유물분할청구는 분할을 구하는 공유자가 다른 모든 공유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고,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대상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이외에 피고 ◇◇◇◇ 3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므로, 피고 ◇◇◇◇ 이외 다른 공유자인 ◆◆◆가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의 피고로 추가되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# 첨 부 서 류

- 1.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부동산) 1통
- 1. 소장부본 1통
- 1. 피고추가신청서 부본 2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제출법원	소가 제기된 법원(수 소법원)	제 출 기 간	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(민사소송법 제68조)
제출부수	신청서 1부, (추가당사자 수+원래 당사자수)부의 부본 및 추가당사자수 만큼의 소장부본 제출.	관련법규	민사소송법 제68조
불복절차 및 기간	·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·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444조)		
기 타	·당사자가 변경됨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까지 하여야 할 경우 가 있음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당사자 >> 소송참가